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9

(비공식번역본)

병해충 박멸프로그램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Pest Eradication Programmes

1998

FAO/IPPC 사무국

차례

승인
검토 및 개정
배포

서론

적용범위
참고 문헌
용어 정의 및 약어
요건의 개요

병해충 박멸프로그램을 위한 일반 요건

1. 일반 정보 및 계획입안 과정

1.1 병해충 보고서 평가

1.2 임시 계획

1.3 보고 요건 및 정보 공유

2. 박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

2.1 초기

2.2 동정

2.3 현재 및 잠재적 병해충 분포 평가

2.3.1 초기 탐지

2.3.1.1 탐지 또는 발생 장소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2.3.1.2 지리적 기원

2.3.1.3 병해충의 경로

2.3.2 분포

2.3.3 확산 예측

2.4 박멸 프로그램 수행 가능성

2.4.1 생물학적 및 경제적 정보

2.4.2 박멸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이익 분석 수행

3. 박멸 과정

3.1 관리팀의 구성

3.2 박멸 프로그램 수행

3.2.1 감시

3.2.2 억제

3.2.3 소독 처리 및/또는 규제 조치

3.3 병해충 박멸의 입증

3.4 문서화

3.5 박멸 선포

4. 프로그램 제검토

승 인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은 FAO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PC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조치의 사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FAO 회원국 및 다른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준은 1997. 11월 제 29차 FAO총회에서 승인되었다.

FAO의장 Jacques Diouf

재검토 및 개정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된다. 이 기준의 차기 검토일자는 2003년 또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른 날짜이다.

기준은 필요시 갱신 및 재발행 될 것이다. Standard holder는 현재 사용되는 edition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배 포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IPPC 사무국에 의해 모든 FAO 회원국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집행(기술)국에 배포된다.

- 아·태 식물보호위원회(APPPC)
- 카리브 식물보호위원회(CPPC)
- 남아메리카 식물보호위원회(COSAVE)
- 안데스 위원회(CA)
-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 아프리카 식물보호협의회(IAPSC)
- 북미 식물보호기구(NAPPO)
- 중남미 식물보호기구(OIRSA)
- 태평양 식물보호기구(PPPO)

서 론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떤 지역에서의 병해충 부재를 설정하거나 재설정하기 위한 병해충 박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관해 기술한다.

참고문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1994. 세계무역기구

특정지역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 결정, 1998. ISPM pub. No. 8. FAO

식물위생용어집, 1999. ISPM Pub. No. 5. FAO

병해충 위험분석 지침, 1996, ISPM Pub. No. 2. FAO

감시를 위한 지침, 1997, ISPM Pub. No. 6. FAO

국제식물보호협약, 1992. FAO

개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 1997. FAO

국제교역과 관련된 식물검역원칙, 1995 ISPM Pub. No. 1. FAO

병해충 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1996 ISPM Pub. No. 4. FAO

용어 정의 및 약어

지 역 (Area)

공식적으로 정의된 국가, 국가의 일부 또는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Containment)

어떤 병해충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 지역 내 및 주위에 식물 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

(병해충의)방제 Control(of a pest)

어떤 병해충 개체군의 억압, 억제 및 박멸

경계 설정 조사 (Delimiting survey)

어떤 병해충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 또는 어떤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탐지 조사 (Detection survey)

병해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조사

위험 지역 (Endangered area)

그 지역에 존재할 경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손실을 야기할 병해충이 정착하기에 생태적 요인이 양호한 지역

(병해충의) 침입 Entry (of a pest)

어떤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박멸 (Eradication)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

정착 (Establishment)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어떤 병해충이 어떤 지역 내에 유입된 후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됨

유입 (Introduction)

병해충의 정착을 야기하는 어떤 병해충의 침입

IPPC

1951년 로마에서 FAO에 기탁되어 그후 개정되어온 국제 식물보호협약

국가식물보호기관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IPPC에 의해 명기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식 기관

발생 (Occurrence)

토착 또는 유입되어 있음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있거나 및/또는 박멸되었음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병해충이 어떤 지역에 존재함

돌발 (Outbreak)

최근에 검출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격리된 병해충의 집단

경로 (Pathway)

어떤 병해충의 유입 또는 전파 수단

병해충(Pest)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식물, 동물 또는 식물병원체의 종, 계통 또는 생태형

병해충무발생지역 (Pest free area)

과학적 증거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이 공식적으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

식물위생법령 (Phytosanitary legislation)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식물위생 규정을 초안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기본 법

식물위생조치 (Phytosanitary measure)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 규정, 또는 공식적인 절차

검역 병해충(Quarantine pest)

위험지역에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있으며, 그 곳에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방제되고 있는 병해충

규제대상물품 (Regulated article)

특히 국제수송과 관련된 장소에서, 병해충이 잠복 또는 전파될 수 있는 저장장소, 포장, 수송 수단, 컨테이너, 흙 및 여타의 생물체, 물품 또는 물질

확산 (Spread)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의 지리적 분포의 확장

억제 (Suppression)

병해충 집단을 줄이기 위해 감염 지역에서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

감시 (Surveillance)

조사, 탐지 또는 여타의 절차에 의해 병해충의 발생이나 부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공식절차

조사 (Survey)

어떤 병해충 집단의 특징을 결정하거나 어떤 종들이 그 지역에 발생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실시되는 공식 절차

소독 처리 (Treatment)

병해충을 사멸, 제거 또는 불임화하기 위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

요건의 개요

병해충 박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에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 어떤 병해충의 최근 침입(병해충무발생지역에서의 재 정착)함에 따라 그 병해충의 정착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조치
- 정착된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병해충무발생지역 설정)

탐지 또는 발생 장소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검토, 오염의 정도, 병해충의 생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 박멸을 위한 현행 기술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병해충 박멸 프로그램의 비용-이익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할 때마다, 병해충의 지리적 기원 및 재도입 경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하다. 병해충위험분석(PRA)은 통보된 결정과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 병해충위험분석 지침” 참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가지 이상의 대안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더욱 조직화된 접근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

박멸 과정에는 감시, 억제, 소독처리 및/또는 규제조치의 3가지 주요 활동이 포함된다.

박멸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그 병해충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입증 절차는 프로그램의 초기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 활동 및 결과의 적절한 문서를 통해 지지되어야 한다. 입증 단계는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무역 상대국이 재보증을 요구할 시 독립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의하여 박멸이 선포된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의 이용 가능성 및 동 프로그램의 비용-이익을 판단하기 위하여 병해충의 생태를 포함한 동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병해충 박멸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 요건

이 기준은 병해충 박멸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존하는 박멸 프로그램의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 프로그램을 위해 검토되는 병해충은, 박멸이 수행되고 비상 박멸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이 유입되는 병해충일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에 정착된 외래 병해충 또는 토착 병해충에 대해 박멸프로그램이 수행될 수도 있다.

1. 일반 정보 및 계획입안 과정

1.1 병해충 보고서의 평가

국가 식물보호기관(NPPO)은 박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병해충 보고서 및 이들 병해충이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공식 접촉창구에 보고 및 병해충 보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치 절차를 권고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포함될 것이다.

1.2 임시 계획

유입 가능성이 높고, 박멸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병해충 또는 병해충 그룹을 다루기 위해, 이 병해충이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기 전에 임시 계획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계획의 개발은, 박멸 프로그램이 잘 계획되었으며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심의, 평가 및 조사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러한 계획은 동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전에 명기 및 합의된 협력 당사자의 조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협력 프로그램이 예상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이전의 성공적인 박멸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은 임시 계획을 개발하거나 고려중인 박멸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은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임시 계획은 비상 박멸조치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보증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박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하듯이 병해충의 생태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서 검토를 위해 계기된 모든 요소들이 모든 박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1.3 보고요건 및 정보 공유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은 국제식물보호협약(개정안 제7.2j조, 제8.1a조 및 제8.1c조)에 따른, 국가 식물보호기관의 보고요건을 유도하는 절차를 착수시키며, 이 과정은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인 “특정 지역의 병해충 상황 결정”에 기술되어 있다.

병해충 박멸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전에, 동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배자, 거주자 및 지방정부와 같은 광범위한 청중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대중 정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수단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박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

박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은 어떤 병해충이 탐지된 환경에 대한 평가, 병해충의 분류동정, 병해충으로 시작된 PRA에 의해 확인되는 위험성, 그 병해충의 현재 및 잠재적 분포 예측 및 박멸 프로그램 수행 가능성 평가에 근거한다. 권고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료 및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비상 박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병해충이 최근에 유입됨), 신속히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비교 평가하여야 하며, 더욱 상세한 분석 및 계획으로부터 얻게되는 이익이 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2.1 착수

박멸 프로그램은 일반적 감시 또는 특별 조사로부터 새로운 병해충이 탐지된 것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 감시를 위한 지침” 참조). 정착된 병해충의 경우, 정책적 고려(예 ; 병해충무발생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취해지는 결정)에 의해 박멸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다.

2.2 동 정

병해충의 정확한 동정은 적절한 박멸 수단을 선정하는데 필수적이다. 국가 식물보호기관은, 과학적 또는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인정을 받고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동정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국가 식물보호기관이 그 병해충에 대해 쉽고 확신을 가지고 확인할 때 동정작업이 즉시 수행될 수 있다.

동정방법은 형태학상의 특성에만 근거한 인식으로부터 더욱 복잡한 생물 검정, 화학 또는 유전학적 분석까지 다양할 수 있다.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의해 궁극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은, 당해 유기체 및 동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널리 수용되는 실제적인 수단에 좌우될 것이다.

최종적인 동정이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취해져야 할 조치들은 기주식물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장래의 분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표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현재 및 잠재적 병해충 분포의 평가

병해충의 현재 분포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병해충과 정착된 병해충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 잠재적 분포는 보통 새로운 병해충에 대해 더욱 중요성이 있으나, 정착된 병해충을 평가하는 데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조사를 위해 확인된 데이터 요소들에는 정착된 병해충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어떤 수준의 상세사항이 포함된다.

2.3.1 초기 조사

새로운 병해충의 탐지, 동 병해충의 지리적 기원 및 경로에 대한 정보가 취합,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박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할 뿐 아니라 병해충 유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병해충 배제시스템의 취약성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3.1.1 병해충이 탐지 또는 발생된 장소에서 수집된 데이터

병해충이 탐지 또는 발생된 장소에서 병해충 및 해당 지역의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 지리적 위치
- 그 장소에서 감염된 기주
- 피해 정도 및 영향 그리고 병해충의 발생 수준
- 병해충 탐지 및 확인 방법
-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의 최근의 수입
- 토지 또는 지역에서의 병해충 발생 사례(기원)
- 사람, 생산품, 장비, 수송수단의 이동
- 지역 내 확산 메카니즘
- 기후 및 토양 조건
- 감염된 식물의 상태
- 재배 관행

2.3.1.2 지리적 기원

병해충의 원산지일 가능성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수집하여야 한다. 병해충의 출처와 경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또는 경유 국가와 관련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2.3.1.3 병해충의 경로

국가 식물보호기관은 새로운 병해충이 유입되어 박멸 프로그램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증하고, 잠재적 배제 대안을 규명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병해충이 침입 또는 확산되었을 수 있는 경로를 판단해야 한다. 경로에 관한 정보에는 가능한 이동방법 뿐만 아니라 병해충을 전파했을 수도 있는 상품 또는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새롭게 수입되는 식물이나 식물성산물과의 관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슷한 재료를 배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3.2 분포에 대한 조사

예비 절차를 통해 조사가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 각 대발생 지역의 경계설정 조사
- 경로 연구에 근거한 조사
- 기타 목표설정 조사

이러한 조사는 규제 목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신뢰수준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실행되어야 한다.

조사 데이터가 수출목적을 위해 병해충무발생지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경우, 식물위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양 및 질을 결정하기 전에 무역상대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3.3 확산 예측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확산 가능성 및 예상되는 확산속도를 평가하고 위험 지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4 박멸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박멸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의 영향 및 정도, 확산 가능성 및 예상 확산 속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PRA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 병해충위험분석 지침” 참조). 가능한 박멸 대안 및 비용-이익 요인들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4.1 생물학적 및 경제적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집될 필요성이 있다.

- 병해충 생태
- 잠재 기주
- 잠재적 확산 및 예상 확산속도

- 가능한 박멸 전략 :
 - 재정 및 자원 비용
 - 기술의 이용가능성
 - 로지스틱(logistic) 및 운영상의 제약
- 산업 및 환경에 대한 영향 :
 - 박멸조치가 없는 경우
 - 확인된 각각의 박멸 대안이 있는 경우

2.4.2 박멸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이익 분석의 수행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 중의 하나는 가장 실행 가능한 박멸기법들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다. 각 전략에 대한 총 비용 및 비용-이익 비율이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 방법 역시 박멸 대안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은 기술(describe)되거나 의사결정자들과 협의되어야 한다. 비용-이익을 포함한 예상되는 장점 및 단점이 가능한 정도 까지 약술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은 기술적 대안들, 이익-비용, 자원의 이용가능성,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하나 이상의 대안들이 권고되어야 한다.

3. 박멸 과정

박멸 과정에는 박멸 프로그램의 수행에 의해 수반되는 관리팀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것은 가급적 설정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요 활동이 포함된다.

- 감시 : 병해충의 분포를 완전히 조사
- 억제 :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
- 처리 : 병해충 발견 시 박멸

관리 당국(보통 국가 식물보호기관)이 지도 및 조정활동을 담당하여, 박멸이 달성되었을 때를 판단하고,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통제절차 및 적절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박멸 과정의 일부 요소들에 대해서는 무역 상대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1 관리팀의 구성

박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박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팀이 구성된다. 관리팀의 크기는 동 프로그램의 범위와 국가 식물보호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규모의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 그룹을 포함한 조정 위원회 또는 자문 그룹이 필요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이 여러 국가들이 포함될 경우, 지역 조정위원회가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팀은 다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박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박멸을 위한 합의된 기준에 일치함을 보증
- 필요시 박멸 계획 수립, 이행 및 수정
-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적절한 권한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음을 보증
- 재정 및 자원 관리
- 운영자의 임무를 지정 및 정의하고, 운영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도록 보증하고 그들의 활동을 문서화
- 대중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관리
- 영향을 받는 그룹(예; 재배자, 무역업자, 다른 정부부서 및 비정부 기관)과의 교류
- 프로그램 문서화 및 적절한 기록보관을 포함한 정보관리 시스템의 이행
- 일일 프로그램 관리
-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3.2 박멸 프로그램 수행

3.2.1 감시

초기에 또는 조기 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설정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병해충의 분포를 체크하고 박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박멸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 감시를 위한 지침” 참조). 감시에는 병해충과 그 병해충의 가능한 확산 근원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 colony 및/또는 contact-linked material에 대한 검사, 검사, 트래핑, 및 항공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재배자, 저장 및 관리 시설의 책임자, 대중들을 목표로 한 질의가 포함될 수 있다.

3.2.2 역 제

국가 식물보호기관은 감시정보를 사용하여 검역지역을 정의하여야 한다. 초기 조사는, 병해충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지역 외곽으로의 이동이 규제될 필요성이 있는 식물, 식물성산물 또는 다른 물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영향을 받는 식물, 식물성산물 및 다른 규제 물품의 소유자는 이러한 규정을 통보 받아야 한다. 규정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박멸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준수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검사, 소독처리 또는 폐기와 같은 식물위생조치의 준수여부를 증명한 후, 통관에 의해 검역지역으로부터 식물, 식물성산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방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것으로 선포되었을 때, 규정의 철회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3.2.3 소독처리 및/또는 규제 조치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주식물 폐기
- 장비 및 시설의 소독
- 약제 또는 생물농약 처리
- 토양 살균제
- 휴 경
- 기주가 없는 기간(host-free period)
- 병해충 집단을 억제 또는 제거하는 재배품종의 사용
- 연작 제한
- 예찰, 미끼 또는 기타 물리적 규제방법
- 생물적 방제 매개체의 방사
- 불임충 기법의 사용
- 오염된 작물의 가공 또는 소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박멸에는 소독처리 방법이 하나 이상이 포함될 것이다. 소독처리 및/또는 규제대안들의 선택은 법적 제한 또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식물보호기관은 비상상황 또는 제한된 사용을 위한 예외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3.3 병해충 박멸의 증명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시작 시 설정된 성공적인 병해충 박멸을 위한 기준이 달성되었다는 것이 관리 당국(보통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의한 증명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기준에서는 병해충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탐색 방법의 강도 및 조사 지속 기간이 명기될 수 있다. 박멸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 병해충 무발생 기간은 병해충의 생태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탐지 기술의 민감도
- 탐지의 용이성
- 병해충의 생활사
- 기후적 영향
- 소독처리의 효과

박멸 계획에는 박멸 선포를 위한 기준과 규정의 철회를 위한 단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3.4 문서화

국가 식물보호기관은 박멸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정보에 대해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무역 상대국이 병해충무발생의 주장을 보증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 식물보호기관이 그러한 문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5 박멸의 선포

박멸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가 식물보호기관이 박멸을 선포한다. 그러면, 동 지역에서의 병해충의 상황은 ‘부재 : 병해충 박멸’이 된다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 특정 지역의 병해충 상황 결정” 참조). 여기에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관심 있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당국과의 정보교류가 포함된다. 박멸선포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의 문서 및 기타 관련 증거는 요청 시 다른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 검토

수집된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고,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및/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박멸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부닥칠 때
- 사전에 조절된 간격
- 프로그램의 종료

박멸을 위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박멸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검토 시에는 그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새로이 수집된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예측과의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이익 요소들 및 운영적인 세부사항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병해충 억제 또는 병해충 관리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박멸계획이 개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